

건설공사원가에 적용되는 4대 사회보장보험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건설공사원가에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도 건설공사원가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의 적용근거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사회보장보험 확대 시행(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105%)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일부 건설자재는 가격폭등 및 품귀현상이 발생되는 등 건설공사에 있어서 고비용이 예상됨으로 건설공사 수주시 4대 사회보장보험 적용 및 주요자재 급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편집자 주]

건설공사원가계산 보험료 적용기준

2004. 2. 18일 기준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적용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 고용보험법 제7조 • 동법시행령 제2조	• 국민연금법 제8조 • 동법시행령 제1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적용대상	• 상시 1인이상 법인사업장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으로 2천만원 초과시점	• 상시 1인이상 법인사업장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으로 2천만원 초과시점	• 상시 1인이상 법인사업장 • 1개월이상 일용근로자 • 월 80시간이상 시간제근로자	• 상시 1인이상 법인사업장 • 1개월이상 일용근로자 • 월 80시간이상 시간제근로자
보험료산출	(직+간접노무비)×적용요율	근로자지급임금총액×적용요율	표준소득월액×적용요율	표준소득월액×적용요율
적용요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 동법시행령 제60조	• 고용보험법 제57조 • 동법시행령 제69조	• 국민연금법 제75조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8조 • 동법시행령 제3조
적용요율	3.3%	• 실업급여 : 0.9%(사업주 1/2부담) • 고용안정 : 0.15%(사업주전액) • 직업능력개발 : 0.1~0.7%(사업주전액)	• 사용자 : 4.5% • 근로자 : 4.5%	• 사용자 : 2.105% • 근로자 : 2.105%
비 고	• 가입자원수급자(원청)	• 가입자원수급자(원청)	• 제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2003. 12. 26) • 기 발생보험료는 원수급자(원청)에 설계변경 요청(각사) (조달청유권해석 : kmca.or.kr, 공개자료실 참조)	

주) 1.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관급자재 시가환산액으로 포함.

2.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기준 : 1주일 15시간, 1월 60시간이상 근로자.

3. 상시근로자 : 월 15일이상 계속근무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하수급자(하도급자)인 경우 원도급자가 일괄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다음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기준"을 만족한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원도급자 대신 하도급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기준

-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 ②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③ 원수급인이 당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④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 ⑥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고용보험

가입자가 하수급자(하도급자)인 경우 원도급자가 일괄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다음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기준"을 만족한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원도급자 대신 하도급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업 하수급인 인정 승인요건

-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 ②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③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④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 할 수 있을 것

적용요율(노동부고시)

고용보험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69조

고용보험 적용요율표

구 분	보험요율	부 담
실업급여	0.9%	사업주, 근로자1/2부담
고용안정	0.15%	사업주전액부담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0.1%
	150인이상(우선대상)	0.3%
	150~1,000인 미만	0.5%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자체 시행사업	0.7%
계	3%이내	

조달청 적용기준(예정가격산정시)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등 급 별	2002년	2003년	2004년
1등급(건축 400억이상)	1.25%	1.06%	2월말 발표예정
2등급(건축 230억이상)	0.93%	0.74%	
3등급(건축 110억이상)	0.77%	0.59%	
4등급(건축 110억미만)	0.65%	0.56%	

※ 등급별 유자격 명부는 조달청공고 참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 (보험료액 등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

- ①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절차에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

◎ 대통령령 제18205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15.8원"을 "123.6원"으로 한다.

제3조 중 "1만분의 394"를 "1만분의 421"로 한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21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